

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상의 불공정 계약조항 사용실태조사

추가공사비 · 민원처리비용 불인정 등 독소조항 다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건설하도급분야의 불공정계약조항 설정 여부 및 이행실태를 2005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 업체 중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도급계약 관련서류에 불공정 계약조항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조사대상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을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관련서류인 ‘계약특수조건’, ‘공사특기 시방서(공사세부 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에 「추가공사비 없음, 물가변동 없음, 민원발생시 비용 불인정」 등 불공정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 사회보험 등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원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반면 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하도급계약시 개별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기타 경비 등과 간접비로 통합 계상하여 반영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결과 나타난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게 시정 및 설정 금지 조치와 아울러 간접비 항목에 포함 계상되는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별 항목으로 계상토록 지도하였으며, 향후 불공정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하도급업체에게 그 이행을 강요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조사결과

1. 불공정 계약조항 설정

1) 추가공사비 미반영

△ 현장 여건 등이 당초 예상과 달라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비 증액은 없음.

△ 일체의 물가변동은 없는 것으로 하며, 미미한 변경은 을(수급사업자)이 부담

2) 하도급대금의 유보

△ 실적 공정률이 전체 예정 공정률에 미달될 시에는 기성금 지급시 확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10%까지 유보할 수 있음.

△ 기성은 월 1회로 하되, 기성금의 90%를 지불하고 10%는 공사 완료후 가 · 감 정산과 더불어 지급.

3) 불이익 제공

△ 이견 발생시 원사업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 계약이행 보증기간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60일을 연장하여 발급.

4) 민원처리비용 전가

△ 민원 및 문제발생시 그 책임은 협력사에 전적으로 있음.

△ 민원 발생시 일체의 이의 제기 및 공사금액 증액은 없음.

5)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 선급금은 지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공사기간을 준수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감이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실공사 물량의 10%를 감함.

2. 4대보험료 공사원가 계상 여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공사원가에 반영이 의무화(2004년 1월부터 공사원가에 반영토록 회계예규 개정)된 4대 사회보험 중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원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반면, 수급사업자 직접 부담금인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업체 대부분이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시 개별항목으로 계상하여 반영 받았으나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시는 개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기타 경비 등과 간접비로 통합 계상하여 반영 여부가 불분명하다.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하도급 관련 건설교통부,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의 수렴,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의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서,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등록된 자동제어 전문분야 등록업체가 하도급 받아 시공하여야…….

최 근 건축물이 고층화 및 첨단화됨에 따라 자동제어 공사의 중요성과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가 적정한 시공능력을 가진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84호)”를 하여 특화된 전문분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동제어공사 등 6개 업종의 해당공사를 특화 전문공사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에서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의 하도급자 선정시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등록된 업체 이외에, 전문분야 미등록업체 또는 무면허업체에게 하도급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 자동제어공사협의회(위원장 윤영근)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는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의를 수렴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의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를 위해서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등록된 자동제어 전문분야 등록업체가 하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투자기관 등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경미한 건설공사(1천만원 미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전문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제어 자재납품업체가 당해공사까지 시공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와 전문건설업 육성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